



## 2022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         |    |             |    |
|---------|----|-------------|----|
| 회의소집통보일 |    | 2022. 3. 4. |    |
| 이사정수    | 8명 | 재적이사        | 8명 |

**【개최일시】** 2022년 3월 18일(금) 15:00

**【개최장소】** 교구청 4층 대회의실

**【참석인원】** 이사 정원 8명 중 출석이사 7명

참석이사 : 김명선, 강정웅, 최재현, 정호, 장수복, 이오복, 현안나

불참이사 : 김영규

참석감사 : 조태덕, 천동원

**【의안심의】** 제1호 의안 : 2021년 법인 및 산하시설 결산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2022년 법인 및 산하시설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법인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산하시설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서로사랑공동생활가정 폐업 승인의 건

**◆ 개최 정족수 보고 및 개최 선언**

의장은 시작기도 후 상임이사로부터 정족수 보고를 듣고, 정관 제2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 의장 인사말씀**

코로나-19의 확산이 정점인 상황 속에서도 법인의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대면회의에 참석해 주신 임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늘 이사회에서는 2021년도 결산을 비롯해 법인의 운영규정 등 총 5건에 관한 의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고자 하니, 이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전차 이사회 회의록 확인**

의장은 전차 회의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할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다. 출석이사 전원이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을 확정하다.

의안심의

◇ 제1호 의안 : 2021년 법인 및 산하시설 결산 승인의 건

- 의장은 상임이사에게 해당 의안에 관해 설명을 요청하다.
- 상임이사는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길 요청하고, 법인을 포함한 산하시설 22곳에서 결산 승인을 요청하여 복지지원팀 지원담당자가 1차로 검토하고, 복지지원팀장이 보완을 하여 조태덕 감사와 천동원 감사가 최종 감사하였음을 설명하다.  
「2021년 법인 및 산하시설 결산자료, 2021년 주요보고 및 2022년 계획」 참조
- 이어서 천동원 감사가 2021년 법인 및 산하시설의 결산에 관한 감사보고를 하다.

< 2021년 법인 및 산하시설 결산 >

(단위 : 천원)

| No | 시 설 명         | 2021년<br>예산(A)<br>[세입=세출] | 세 입            |             |            | 세 출            |             |            | 차인<br>잔액 |         |
|----|---------------|---------------------------|----------------|-------------|------------|----------------|-------------|------------|----------|---------|
|    |               |                           | 2021년<br>결산(B) | 잔액<br>(A-B) | 집행율<br>(%) | 2021년<br>결산(B) | 잔액<br>(A-B) | 집행율<br>(%) |          |         |
| 1  | 로사리오 카리타스     | 1,411,274                 | 1,307,172      | 104,102     | 92.6       | 1,032,065      | 379,209     | 73.1       | 275,107  |         |
| 2  | 감만종합사회복지관     | 2,905,805                 | 2,853,713      | 52,092      | 98.2       | 2,751,768      | 154,037     | 94.7       | 101,945  |         |
| 3  | 당감종합사<br>회복지관 | 복지관                       | 2,156,000      | 2,140,938   | 15,062     | 99.3           | 1,930,317   | 225,683    | 89.5     | 210,621 |
|    |               | 푸드마켓                      | 66,015         | 65,200      | 815        | 98.8           | 62,200      | 3,815      | 94.2     | 3,000   |
| 4  |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 1,998,022                 | 1,992,351      | 5,671       | 99.7       | 1,865,503      | 132,519     | 93.4       | 126,848  |         |
| 5  | 서구종합<br>사회복지관 | 복지관                       | 2,928,307      | 2,915,442   | 12,865     | 99.6           | 2,791,065   | 137,242    | 95.3     | 124,377 |
|    |               | 서구노인주간<br>보호센터            | 249,716        | 231,995     | 17,721     | 92.9           | 207,038     | 42,678     | 82.9     | 24,957  |
|    |               | 서구장애인<br>주간보호센터           | 157,499        | 150,658     | 6,841      | 95.7           | 123,863     | 33,636     | 78.6     | 26,795  |
| 6  | 중구종합<br>사회복지관 | 복지관                       | 1,315,804      | 1,314,622   | 1,182      | 99.9           | 1,263,628   | 52,176     | 96       | 50,994  |
|    |               | 노틀담노인복지센터                 | 182,968        | 182,298     | 670        | 99.6           | 165,921     | 17,047     | 90.7     | 16,377  |
|    |               | 노틀담노인복지센터<br>(주간보호)       | 219,932        | 212,783     | 7,149      | 96.7           | 204,485     | 15,447     | 93       | 8,298   |

| No | 시 설 명                 | 2021년<br>예산(A)<br>[세입=세출] | 세 입            |             |            | 세 출            |             |            | 차인<br>잔액                |         |
|----|-----------------------|---------------------------|----------------|-------------|------------|----------------|-------------|------------|-------------------------|---------|
|    |                       |                           | 2021년<br>결산(B) | 잔액<br>(A-B) | 집행율<br>(%) | 2021년<br>결산(B) | 잔액<br>(A-B) | 집행율<br>(%) |                         |         |
|    | 중구장애인<br>주간보호센터       | 96,273                    | 95,755         | 518         | 99.5       | 89,720         | 6,553       | 93.2       | 6,035                   |         |
|    | 중구다솜나래<br>푸드마켓        | 53,059                    | 52,927         | 132         | 99.8       | 52,815         | 244         | 99.5       | 112                     |         |
| 7  | 강서노인<br>종합복지관         | 복지관                       | 3,788,961      | 3,726,371   | 62,590     | 98.3           | 3,620,579   | 168,382    | 95.6                    | 105,792 |
|    |                       | 가덕도동노인복지관                 | 167,664        | 161,910     | 5,754      | 96             | 148,969     | 18,695     | 88                      | 12,941  |
|    |                       | 하늘바람재가노인<br>지원서비스센터       | 144,352        | 137,646     | 6,706      | 95.4           | 136,929     | 7,423      | 94.9                    | 717     |
| 8  | 중구노인<br>복지관           | 복지관                       | 4,293,180      | 4,263,007   | 30,173     | 99.3           | 4,177,231   | 115,949    | 97.3                    | 85,776  |
|    |                       | 분관                        | 560,400        | 549,463     | 10,937     | 98             | 535,878     | 24,522     | 95.6                    | 13,585  |
|    |                       | 중구재가노인지원<br>서비스센터(주간보호)   | 231,300        | 233,149     | △1,849     | 100.8          | 219,763     | 11,537     | 95                      | 13,386  |
|    |                       | 중구재가노인지원<br>서비스센터(방문요양)   | 723,930        | 716,699     | 7,231      | 99             | 700,150     | 23,780     | 96.7                    | 16,549  |
| 9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 4,925,010                 | 4,993,865      | △68,855     | 101.4      | 4,993,865      | △68,855     | 101.4      | 세출결산<br>포함<br>(189,511) |         |
| 10 | 울산광역시<br>동구장애인<br>복지관 | 복지관                       | 1,908,075      | 1,911,940   | △3,865     | 100.2          | 1,756,487   | 151,588    | 92.1                    | 155,453 |
|    |                       | 주간보호센터                    | 253,144        | 255,913     | △2,769     | 101.1          | 212,286     | 40,858     | 83.9                    | 43,627  |
| 11 | 천사의집                  | 274,358                   | 272,764        | 1,594       | 99.4       | 233,449        | 40,909      | 85.1       | 39,315                  |         |
| 12 | 물만골공부방                | 146,497                   | 151,307        | △4,810      | 103.3      | 124,277        | 22,220      | 84.8       | 27,030                  |         |
| 13 | 우리누리지역아동센터            | 224,580                   | 176,624        | 47,956      | 78.6       | 170,548        | 54,032      | 75.9       | 6,076                   |         |
| 14 | 가톨릭사회복지회나눔터           | 91,247                    | 91,673         | △426        | 100.5      | 78,156         | 13,091      | 85.7       | 13,517                  |         |
| 15 | 아순타의집                 | 94,814                    | 93,884         | 930         | 99         | 87,364         | 7,450       | 92.1       | 6,520                   |         |
| 16 | 서로사랑공동생활가정            | 91,852                    | 93,434         | △1,582      | 101.7      | 82,283         | 9,569       | 89.6       | 11,151                  |         |
| 17 | 착한목자의 집               | 145,553                   | 146,097        | △544        | 100.4      | 89,188         | 56,365      | 61.3       | 56,909                  |         |

| No | 시 설 명               | 2021년<br>예산(A)<br>[세입-세출] | 세 입            |             |            | 세 출            |             |            | 차인<br>잔액 |
|----|---------------------|---------------------------|----------------|-------------|------------|----------------|-------------|------------|----------|
|    |                     |                           | 2021년<br>결산(B) | 잔액<br>(A-B) | 집행율<br>(%) | 2021년<br>결산(B) | 잔액<br>(A-B) | 집행율<br>(%) |          |
| 18 | 농아복지회               | 59,045                    | 59,484         | △439        | 100.7      | 53,644         | 5,401       | 90.9       | 5,840    |
|    | 부산가톨릭<br>농아인<br>복지회 | 166,217                   | 162,813        | 3,404       | 98.0       | 157,873        | 8,344       | 95.0       | 4,940    |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1,192,922                 | 1,191,465      | 1,457       | 99.9       | 1,081,199      | 111,723     | 90.6       | 110,266  |
| 19 |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664,159                   | 668,410        | △4,251      | 100.6      | 612,369        | 51,790      | 92.2       | 56,041   |
| 20 | 평화주간보호센터            | 274,549                   | 276,057        | △1,508      | 100.5      | 230,749        | 43,800      | 84         | 45,308   |
| 21 | 하나장애인지업재활시설         | 686,159                   | 683,916        | 2,243       | 99.7       | 628,160        | 57,999      | 91.5       | 55,756   |
| 22 | 평화여성의집              | 1,012,188                 | 677,882        | 334,306     | 67         | 642,032        | 370,156     | 63.4       | 35,850   |
| 23 | 초원의집(이주여성보호시설)      | 365,797                   | 351,238        | 14,559      | 96         | 343,457        | 22,341      | 93.9       | 7,781    |

- 이오복 이사가 지출 초과가 되면 관할 구청의 지도점검에서 제재를 받는 상황은 아닌지 묻다.
- 지출에서 초과가 되면 지도점검 때 지적사항이 될 수 있지만, 전체 지출 초과가 아닌 관할에서의 지출 초과라서 제재를 받는 상황은 아니라고 대답하다.

[제1호 의안인 2021년 법인 및 산하시설 결산(안)에 관하여 임원들이 심의하다]

- 의장은 질의사항이 있는지 묻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기를 요청하다.
- 이에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1호 의안인 2021년 법인 및 산하시설 결산 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의장이 선언하다.

◇ 제2호 의안 : 2022년 법인 및 산하시설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

○ 의장은 상임이사에게 해당 의안에 관해 설명을 요청하다.

○ 상임이사는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길 요청하다.

2022년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요청한 곳은 법인과 시설 18곳이라고 하다. 법인은 결산 잔액 확장에 따른 이월금 증액과 지정후원금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액, 전입금 감소, 잡수입 증가에 따른 전출금 증액, 예산 조정으로 인한 예비비 증액 사항이 있으며, 시설은 대체로 2022년 보조금 예산과 전년도이월금 확정 등으로 인한 예산 조정사항이라고 설명하다.

< 2022년 법인 및 산하시설 추가경정예산 >

(단위 : 천원)

| 시 설 명                           | 예 산       | 추경 예산          |           | 증감액     | 증감내용   |       |           |
|---------------------------------|-----------|----------------|-----------|---------|--|-------|-----------|
| 로스리오<br>카리타스                    | 1,453,445 | (1차) 1,499,046 |           | 45,601  | [세입]<br>재산수입, 후원금,<br>이월금, 잡수입<br>증가<br>전입금 감소<br><br>[세출]<br>사업비, 전출금,<br>예비비 증가                |       |           |
|                                 |           | 재산수입           | 14,300    |         |  | 사무비   | 358,600   |
|                                 |           | 사업수입           | 2,000     |         |  | 재산조성비 | 40,000    |
|                                 |           | 후원금수입          | 461,582   |         |  | 사업비   | 665,455   |
|                                 |           | 전입금            | 719,006   |         |  | 전출금   | 349,100   |
|                                 |           | 이월금            | 275,108   |         |  | 잡지출   | 462       |
|                                 |           | 잡수입            | 27,050    |         |  | 예비비   | 85,429    |
| 감만종합<br>사회복지관                   | 2,718,090 | (1차) 2,876,538 |           | 158,448 | [세입]<br>보조금 증가<br>이월금 감소<br><br>[세출]<br>사무비(인건비),<br>사업비 증가                                      |       |           |
|                                 |           | 사업수입           | 42,000    |         |  | 사무비   | 813,551   |
|                                 |           | 보조금            | 2,331,473 |         |  | 재산조성비 | 20,000    |
|                                 |           | 후원금            | 365,630   |         |  | 사업비   | 2,009,887 |
|                                 |           | 전입금            | 20,000    |         |  | 잡지출   | 1,000     |
|                                 |           | 이월금            | 101,945   |         |  | 예비비   | 32,100    |
|                                 |           | 잡수입            | 15,490    |         |  |       |           |
| 당<br>감<br>총<br>합<br>사<br>회<br>복 | 2,040,159 | (1차) 2,094,014 |           | 53,855  | [세입]<br>보조금, 후원금,<br>이월금, 잡수입<br>증가<br>사업수입 감소<br><br>[세출]<br>사무비,<br>재산조성비,<br>사업비 증가<br>예비비 감소 |       |           |
|                                 |           | 사업수입           | 136,820   |         |  | 사무비   | 784,393   |
|                                 |           | 보조금            | 1,591,953 |         |  | 재산조성비 | 39,556    |
|                                 |           | 후원금            | 126,470   |         |  | 사업비   | 1,054,706 |
|                                 |           | 전입금            | 15,000    |         |  | 예비비   | 215,359   |
|                                 |           | 이월금            | 210,621   |         |  |       |           |
|                                 |           | 잡수입            | 13,150    |         |  |       |           |

| 시 설 명               |           | 예 산            | 추경 예산          |             | 증감액  | 증감내용  |
|---------------------|-----------|----------------|----------------|-------------|--|---|
| 지 관                 | 푸드마켓      | 66,015         | (1차) 69,015    |             | 3,000  | [세입]<br>이월금 증가<br><br>[세출]<br>사무비(인건비),<br>사업비 증가<br>사무비(운영비)<br>감소   |
|                     |           |                | 사업수입 0         | 사무비 49,364  |  |   |
|                     |           |                | 보조금 60,000     | 재산조성비 4,636 |  |   |
|                     |           |                | 후원금 6,000      | 사업비 15,000  |  |   |
|                     |           |                | 전입금 0          | 잡지출 0       |  |   |
|                     |           |                | 이월금 3,000      | 예비비 15      |  |   |
|                     |           |                | 잡수입 15         |             |  |   |
| 사하구종합<br>사회복지관      | 2,222,699 | (1차) 2,480,263 |                | 257,564     | [세입]<br>보조금, 후원금,<br>이월금 증가<br>잡수입 감소<br><br>[세출]<br>사무비(인건비),<br>재산조성비,<br>사업비 증가 |   |
|                     |           | 사업수입 2,000     | 사무비 779,788    |             |  |   |
|                     |           | 보조금 1,986,644  | 재산조성비 506,868  |             |  |   |
|                     |           | 후원금 317,668    | 사업비 1,188,961  |             |  |   |
|                     |           | 전입금 40,000     | 예비비 4,646      |             |  |   |
|                     |           | 이월금 126,848    |                |             |  |   |
|                     |           | 잡수입 7,103      |                |             |  |   |
| 서 구 종합<br>사 회 복 지 관 | 복지관       | 2,688,584      | (1차) 2,889,689 |             | 201,105  | [세입]<br>보조금, 전입금,<br>잡수입 증가<br>사업수입, 후원금<br>감소<br><br>[세출]<br>사무비(인건비),<br>재산조성비,<br>사업비, 예비비<br>증가<br>사무비(업무추진비)<br>감소 |
|                     |           |                | 사업수입 2,070     | 사무비 831,255 |  |   |
|                     |           | 보조금 2,557,015  | 재산조성비 36,825   |             |  |   |
|                     |           | 후원금 147,600    | 사업비 1,956,143  |             |  |   |
|                     |           | 전입금 30,300     | 잡지출 100        |             |  |   |
|                     |           | 이월금 124,378    | 예비비 65,366     |             |  |   |
|                     |           | 잡수입 28,326     |                |             |  |   |
| 노인주간<br>보호센터        | 254,071   | (1차) 247,350   |                | △6,721      | [세입]<br>잡수입 증가<br>이월금 감소<br><br>[세출]<br>예비비 감소                                     |   |
|                     |           | 사업수입 36,500    | 사무비 181,130    |             |  |   |
|                     |           | 후원금 8,000      | 재산조성비 12,212   |             |  |   |
|                     |           | 요양급여 177,728   | 사업비 23,900     |             |  |   |
|                     |           | 이월금 24,957     | 잡지출 200        |             |  |   |
|                     |           | 잡수입 165        | 예비비 29,908     |             |  |   |

| 시 설 명                                     |                         | 예 산       | 추경 예산   |  | 증감액    | 증감내용  |
|---|-------------------------|-----------|---|--|--------|---|
|   | 서구<br>장애인<br>주간보호<br>센터 | 167,930   | (1차) 174,811  |  | 6,881  | [세입]<br>이월금, 잡수입<br>증가<br><br>[세출]<br>사무비(운영비),<br>재산조성비,<br>사업비, 예비비<br>증가                         |
|   |                         |           | 사업수입 22,560<br>보조금 121,824<br>후원금 3,360<br>이월금 26,796<br>잡수입 271                      | 사무비 137,324<br>재산조성비 10,506<br>사업비 20,499<br>예비비 6,482                 |        |   |
| 중<br>구<br>중<br>합<br>사<br>회<br>복<br>지<br>관 | 복지관                     | 1,297,502 | (1차) 1,372,503  |  | 75,001 | [세입]<br>사업수입, 보조금,<br>이월금 증가<br><br>[세출]<br>사무비(운영비),<br>재산조성비,<br>사업비, 예비비<br>증가<br>사무비(인건비)<br>감소 |
|   |                         |           | 사업수입 118,678<br>보조금 933,661<br>후원금 219,200<br>전입금 12,960<br>이월금 50,994<br>잡수입 37,010  | 사무비 868,713<br>재산조성비 22,496<br>사업비 406,166<br>잡지출 0<br>예비비 75,128      |        |   |
|   | 중구<br>다솜나라<br>푸드마켓      | 55,132    | (1차) 57,714   |  | 2,582  | [세입]<br>보조금, 후원금<br>증가<br>이월금 감소<br><br>[세출]<br>사무비(인건비,<br>운영비), 사업비,<br>예비비 증가                    |
|   |                         |           | 사업수입 0<br>보조금 53,600<br>후원금 4,000<br>이월금 112<br>잡수입 2                                 | 사무비 55,418<br>재산조성비 1,122<br>사업비 1,000<br>예비비 174                      |        |   |
| 중<br>구<br>노<br>인<br>복<br>지<br>관           | 복지관                     | 4,418,000 | (1차) 4,428,290  |  | 10,290 | [세입]<br>보조금, 후원금,<br>이월금 증가<br>사업수입, 전입금,<br>잡수입 감소<br><br>[세출]<br>사무비(인건비,<br>운영비), 사업비<br>증가      |
|   |                         |           | 사업수입 104,810<br>보조금 4,090,408<br>후원금 105,160<br>전입금 37,001<br>이월금 85,776<br>잡수입 5,135 | 사무비 787,079<br>재산조성비 20,000<br>사업비 3,613,444<br>잡지출 3,000<br>예비비 4,767 |        |   |

| 시 설 명                               | 예 산       | 추경 예산  |  | 증감액       | 증감내용  |
|-------------------------------------|-----------|--|--|-----------|---|
| 중구노인<br>복지관<br>분관                   | 575,180   | (1차) 573,880   |  | △1,300    | [세입]<br>사업수입, 보조금<br>증가<br>후원금, 이월금,<br>잡수입 감소<br><br>[세출]<br>예비비 증가<br>사무비(인건비,<br>운영비),<br>재산조성비,<br>사업비 감소                     |
|                                     |           | 사업수입 17,750<br>보조금 515,280<br>후원금 10,502<br>전입금 16,001<br>이월금 13,356<br>잡수입 991        | 사무비 326,449<br>재산조성비 3,000<br>사업비 204,040<br>잡지출 500<br>예비비 39,891                                 |           |   |
| 중구재가<br>노인지원<br>서비스<br>센터<br>(주간보호) | 250,840   | (1차) 263,692   |  | 12,852    | [세입]<br>요양급여수입,<br>이월금, 잡수입<br>증가<br><br>[세출]<br>사무비, 사업비,<br>잡지출 증가<br>예비비 감소  |
|                                     |           | 입소자부담 38,000<br>보조금 1,200<br>요양급여 210,160<br>전입금 0<br>이월금 13,771<br>잡수입 561            | 사무비 233,732<br>재산조성비 3,000<br>사업비 16,180<br>전출금 5,000<br>잡지출 1,200<br>예비비 2,580<br>적립금 및 준비금 2,000 |           |   |
| 중구재가<br>노인지원<br>서비스<br>센터<br>(방문요양) | 579,680   | (1차) 587,260   |  | 7,580     | [세입]<br>이월금, 잡수입<br>증가<br><br>[세출]<br>예비비 증가<br>사무비 감소  |
|                                     |           | 입소자부담 30,000<br>보조금 1,200<br>요양급여 539,000<br>이월금 16,549<br>잡수입 511                     | 사무비 528,316<br>재산조성비 4,000<br>사업비 15,500<br>전출금 27,000<br>잡지출 200<br>예비비 10,244<br>적립금 및 준비금 2,000 |           |   |
| 울산광역시<br>장애인종합<br>복지관               | 4,827,757 | (1차) 7,326,811   |  | 2,499,054 | [세입]<br>보조금, 후원금,<br>이월금, 잡수입<br>증가<br>사업수입 감소<br><br>[세출]<br>사무비(운영비),<br>재산조성비,<br>사업비, 잡지출,<br>예비비 증가<br>사무비(인건비,<br>업무추진비) 감소 |
|                                     |           | 사업수입 238,036<br>보조금 6,736,077<br>후원금 122,200<br>전입금 40,000<br>이월금 189,413<br>잡수입 1,085 | 사무비 2,580,241<br>재산조성비 20,023<br>사업비 4,605,618<br>잡지출 1,100<br>예비비 119,829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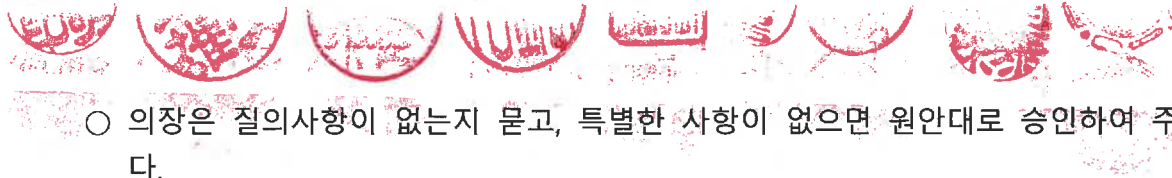
| 시 설 명  |                         | 예 산       | 추경 예산          |               | 증감액     | 증감내용  |
|--|-------------------------|-----------|----------------|---------------|---------|---|
| 울<br>산<br>동<br>구<br>장<br>애<br>인<br>복<br>지<br>관 | 복지관                     | 1,633,453 | (1차) 1,880,755 |               | 247,302 | [세입]<br>보조금, 후원금,<br>이월금 증가<br><br>[세출]<br>사무비(운영비),<br>재산조성비,<br>사업비, 예비비<br>증가<br>사무비(인건비,<br>업무추진비) 감소 |
|  |                         |           | 이용료수입 133,144  | 사무비 1,263,307 |         |   |
|  |                         |           | 보조금 1,511,931  | 재산조성비 16,102  |         |   |
|  |                         |           | 후원금 59,742     | 사업비 569,286   |         |   |
|  |                         |           | 전입금 20,000     | 잡지출 500       |         |   |
|  |                         |           | 이월금 155,453    | 예비비 31,560    |         |   |
|  |                         |           | 잡수입 485        |               |         |   |
|  | 동구<br>장애인<br>주간보호<br>센터 | 261,590   | (1차) 281,841   |               | 20,251  | [세입]<br>보조금, 후원금,<br>이월금 증가<br><br>[세출]<br>사무비(인건비,<br>운영비), 사업비,<br>예비비 증가                               |
|  |                         |           | 사업수입 20,240    | 사무비 203,452   |         |   |
|  |                         |           | 보조금 200,751    | 재산조성비 5,900   |         |   |
|  |                         |           | 후원금 15,123     | 사업비 49,849    |         |   |
|  |                         |           | 전입금 2,000      | 잡지출 600       |         |   |
|  |                         |           | 이월금 43,627     | 예비비 22,040    |         |   |
|  |                         |           | 잡수입 100        |               |         |   |
| 물만골<br>공부방                                     |                         | 130,678   | (1차) 129,799   |               | △879    | [세입]<br>보조금 증가<br>후원금, 이월금<br>감소<br><br>[세출]<br>사무비(인건비,<br>운영비) 증가<br>사업비 감소                             |
|  |                         |           | 보조금 99,167     | 사무비 92,379    |         |   |
|  |                         |           | 후원금 12,503     | 재산조성비 4,500   |         |   |
|  |                         |           | 전입금 0          | 사업비 32,248    |         |   |
|  |                         |           | 이월금 18,129     | 예비비 672       |         |   |
|  |                         |           | 잡수입 0          |               |         |   |
| 우리누리<br>지역아동센터                                 |                         | 183,560   | (1차) 205,773   |               | 22,213  | [세입]<br>보조금, 후원금<br>증가<br>이월금 감소<br><br>[세출]<br>사무비(업무추진비,<br>운영비), 사업비,<br>예비비 증가<br>사무비(인건비)<br>감소      |
|  |                         |           | 보조금 141,598    | 사무비 111,903   |         |   |
|  |                         |           | 후원금 58,000     | 재산조성비 4,500   |         |   |
|  |                         |           | 전입금 0          | 사업비 88,650    |         |   |
|  |                         |           | 이월금 6,075      | 예비비 720       |         |   |
|  |                         |           | 잡수입 100        |               |         |   |

| 시 설 명           |            | 예 산     | 추경 예산        |         | 증감액    | 증감내용  |       |         |
|-----------------|------------|---------|--------------|---------|--------|---|-------|---------|
| 아순타의 집          |            | 97,622  | (1차) 103,575 |         | 5,953  | [세입]<br>보조금, 이월금<br>증가<br>[세출]<br>사무비(인건비),<br>재산조성비,<br>사업비(사업비)<br>증가<br>사무비(운영비),<br>사업비(운영비),<br>예비비 감소 |       |         |
|                 |            |         | 입소자부담        | 12,000  |        |   | 사무비   | 76,679  |
|                 |            |         | 보조금          | 82,629  |        |   | 재산조성비 | 1,200   |
|                 |            |         | 후원금          | 1,200   |        |   | 사업비   | 22,380  |
|                 |            |         | 전입금          | 0       |        |   | 예비비   | 3,316   |
|                 |            |         | 이월금          | 6,520   |        |   |       |         |
|                 |            |         | 잡수입          | 1,226   |        |   |       |         |
| 서로사랑<br>공동생활가정  |            | 94,365  | (1차) 98,901  |         | 4,536  | [세입]<br>보조금, 이월금<br>증가<br>[세출]<br>사무비(인건비),<br>사업비 증가<br>재산조성비,<br>예비비 감소                                   |       |         |
|                 |            |         | 사업수입         | 9,600   |        |   | 사무비   | 81,121  |
|                 |            |         | 보조금          | 73,710  |        |   | 재산조성비 | 1,400   |
|                 |            |         | 후원금          | 2,420   |        |   | 사업비   | 16,000  |
|                 |            |         | 전입금          | 2,000   |        |   | 잡지출   | 50      |
|                 |            |         | 이월금          | 11,151  |        |   | 예비비   | 330     |
|                 |            |         | 잡수입          | 20      |        |   |       |         |
| 착한목자의집          |            | 144,550 | (1차) 145,887 |         | 1,337  | [세입]<br>이월금 증가<br>보조금 감소<br>[세출]<br>사업비, 예비비<br>증가<br>사무비(인건비)<br>감소  |       |         |
|                 |            |         | 입소자부담        | 14,400  |        |   | 사무비   | 70,411  |
|                 |            |         | 보조금          | 67,544  |        |   | 재산조성비 | 5,000   |
|                 |            |         | 후원금          | 7,000   |        |   | 사업비   | 36,750  |
|                 |            |         | 이월금          | 56,909  |        |   | 잡지출   | 0       |
|                 |            |         | 잡수입          | 34      |        |   | 예비비   | 33,726  |
|                 |            |         |              |         |        |   |       |         |
| 부산가톨릭<br>농아인복지회 | 복지회        | 48,952  | (1차) 49,664  |         | 712    | [세입]<br>이월금 증가<br>후원금 감소<br>[세출]<br>사무비(인건비,<br>운영비),<br>재산조성비 증가   |       |         |
|                 |            |         | 후원금          | 41,400  |        |   | 사무비   | 36,163  |
|                 |            |         | 전입금          | 0       |        |   | 재산조성비 | 11,054  |
|                 |            |         | 이월금          | 5,841   |        |   | 사업비   | 2,447   |
|                 |            |         | 잡수입          | 2,423   |        |   | 예비비   | 0       |
|                 |            |         |              |         |        |   |       |         |
|                 |            |         |              |         |        |   |       |         |
| 주간보호<br>센터      | 주간보호<br>센터 | 171,502 | (1차) 169,272 |         | △2,230 | [세입]<br>후원금 증가<br>보조금, 이월금<br>감소<br>[세출]<br>사무비(인건비,<br>운영비) 감소   |       |         |
|                 |            |         | 사업수입         | 11,520  |        |   | 사무비   | 145,161 |
|                 |            |         | 보조금          | 147,408 |        |   | 재산조성비 | 0       |
|                 |            |         | 후원금          | 5,400   |        |   | 사업비   | 24,110  |
|                 |            |         | 이월금          | 4,939   |        |   | 예비비   | 1       |
|                 |            |         | 잡수입          | 5       |        |   |       |         |
|                 |            |         |              |         |        |   |       |         |

| 시 설 명                    | 예 산       | 추경 예산          |             | 증감액        | 증감내용  |
|--------------------------|-----------|----------------|-------------|------------|---|
| 장애인<br>활동<br>지원사업        | 1,276,735 | (1차) 1,282,646 |             | 5,911      | [세입]<br>이월금 증가<br>사업수입 감소<br><br>[세출]<br>사업비(이월사업비)<br>증가<br>사무비(인건비),<br>사업비(사업비)<br>감소      |
|                          |           | 사업수입 1,172,160 | 사무비 115,048 |            |   |
| 울산광역시<br>발달장애인<br>평생교육센터 | 655,264   | (1차) 660,692   |             | 5,428      | [세입]<br>보조금, 이월금<br>증가<br>사업수입, 잡수입<br>감소<br>[세출]<br>사무비, 예비비<br>증가<br>사업비 감소                 |
|                          |           | 사업수입 50,660    | 사무비 522,527 |            |   |
| 평화주간<br>보호센터             | 263,860   | (1차) 288,424   |             | 24,564     | [세입]<br>보조금, 이월금<br>증가<br><br>[세출]<br>사무비(운영비),<br>재산조성비,<br>사업비, 예비비<br>증가<br>사무비(인건비)<br>감소 |
|                          |           | 사업수입 19,770    | 사무비 210,772 |            |   |
| 하나장애인<br>직업재활시설          | 413,031   | (1차) 438,071   |             | 25,040     | [세입]<br>보조금, 이월금<br>증가<br><br>[세출]<br>사무비(인건비,<br>운영비), 사업비<br>증가                             |
|                          |           | 사업수입 40,000    | 사무비 334,586 |            |   |
|                          |           | 후원금 11,000     | 사업비 66,136  | 전입금 14,400 | 잡지출 500   |
|                          |           | 이월금 55,756     | 예비비 849     | 잡수입 1,050  |   |

| 시 설 명          | 예 산     | 추경 예산        |             | 증감액   | 증감내용  |            |             |
|----------------|---------|--------------|-------------|-------|---|------------|-------------|
| 초원의집<br>(이주여성) | 422,354 | (1차) 423,623 |             | 1,269 | [세입]<br>후원금, 이월금<br>증가<br>보조금 감소<br><br>[세출]<br>사무비(운영비),<br>사업비(운영비),<br>잡지출 증가<br>사무비(인건비),<br>사업비(사업비)<br>감소 |            |             |
|                |         | 보조금 380,842  | 사무비 289,443 |       |   | 후원금 24,100 | 재산조성비 4,000 |

[제2호 의안인 2022년 법인 및 산하시설 추가경정예산에 관하여 임원들이 심의하다]



- 의장은 질의사항이 없는지 묻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기를 요청하다.
- 이에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2호 의안인 2022년 법인 및 산하시설 추가경정 예산 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의장이 선언하다.

◇ 제3호 의안 : 법인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의장은 상임이사에게 해당 의안에 관해 설명을 요청하다.
- 상임이사는 전년도에 복지관 중간관리자 TF팀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며 법인 및 산하시설의 공통적용 규정을 정리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법인의 전반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공통적용 규정은 산하시설에서도 기본적으로 적용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시설의 특수성에 따른 규정(안)의 추가 또는 수정이 필요 시 이사회 승인을 받아 반영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하다. 법인 사무국 운영규정, 산하시설 관리규정, 공통적용 규정 11건을 승인해 주기를 요청하다.

< 법인 운영규정 개정(안) >

| 규정 구분     | 조 항                   |  |
|-----------|-----------------------|--|
| 법인 사무국 운영 | 제4장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
|           | 제2장 직제                | 제3조(조직), 제4조(직책 및 임무), 제5조(위임전결)   |
|           | 제3장 인사                | 제6조(임용권자), 제7조(직급 및 직책), 제8조(보직관리 및 전출), 제9조(근무평정)   |
|           | 제4장 복무                | 제10조(근무), 제11조(연차휴가)   |
|           | 제5장 보수                | 제12조(계약체결), 제13조(임금책정), 제14조(보수의 지급)   |
|           | 부칙                    |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 제3조(법령 등의 우선)   |
|           | 별표                    | [별표 1] 조직구성  |
| 산하시설 관리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제4조(명칭), 제5조(운영의 기본원칙)  |
|           | 제2장 직제                | 제6조(기구), 제7조(구성원), 제8조(직급과 보직), 제9조(대표이사), 제10조(상임이사), 제11조(이사), 제12조(감사), 제13조(종사자), 제14조(위임전결)                   |
|           | 제3장 시설운영              | 제15조(시설운영 원칙), 제16조(운영위원회), 제17조(인사위원회), 제18조(임시기구), 제19조(재무회계), 제20조(재산관리), 제21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제22조(수탁시설 신청 및 지원) |
|           | 제4장 인사관리              | 제23조(적용), 제24조(인사권과 인사기록)  |
|           | 제5장 산하시설의 지도 및 감독     | 제25조(시설 지도 및 감독), 제26조(감사), 제27조(산하시설 현황 보고)   |
|           | 제6장 지역 및 분야별 협의회·네트워크 | 제28조(협의회·네트워크 조직)  |
|           | 제7장 종사자 역량강화          | 제29조(종사자 역량강화의 목적), 제30조(종사자 역량강화의 의무), 제31조(법인 사무국 직원의 역량강화)  |
|           | 제8장 종사자 외부            | 제32조(목적), 제33조(적용범위), 제34조(외부 출강 및 수강 처리),   |

|                  |  |            |   |
|------------------|--|------------|---|
| 규<br>정<br>예<br>외 |  | 출강 및 수강    | 제35조(수강원칙)  |
|                  |  | 부칙         | 제1조(이외의 사항), 제2조(시행일)   |
|                  | 1. 조직관리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
|                  |  | 제2장 조직     | 제4조(조직), 제5조(운영위원회), 제6조(인사위원회), 제7조(임시기구)  |
|                  |  | 제3장 업무분장   | 제8조(적용범위), 제9조(업무분장원칙), 제10조(업무분장 한계조정), 제11조(권한과 책임), 제12조(업무분장 공통 업무), 제13조(부서별 업무내용)   |
|                  |  | 제4장 구성원    | 제14조(직위 및 직종 등) 제15조(구성원의 배정) 제16조(준용)  |
|                  |  | 부칙         | 제1조(시행일), 제2조(법령 등의 우선)   |
|                  |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제3조(직원의 직종, 직급 및 직명) 제4조(용어의 정의)   |
|                  | 2. 인사관리  | 제2장 인사위원회  | 제5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6조(기능), 제7조(구성), 제8조(위원회 임기), 제9조(위원의 직능), 제10조(회의요구 및 소집), 제11조(위원회의 성립), 제12조(의결), 제13조(서면심의), 제14조(기피), 제15조(자료제출), 제16조(의견제출), 제17조(회의록), 제18조(비밀엄수) |
|                  |  | 제3장 채용     | 제19조(채용원칙), 제20조(결격사유), 제21조(채용서류), 제22조(발령·취소), 제23조(수습임용), 제24조(채용절차의 공정화)  |
|                  |  | 제4장 보직     | 제25조(보직원칙), 제26조(순환보직), 제27조(전보제한), 제28조(직무대리), 제29조(겸직), 제30조(파견), 제31조(직위해제), 제32조(휴직자 등의 결원보충)   |
|                  |  | 제5장 승급과 승진 | 제33조(승급의 원칙), 제34조(호봉의 획정), 제35조(호봉의 경력 인정범위), 제36조(승진의 원칙), 제37조(승진소요기간), 제38조(승급과 승진의 제한)   |
|                  |  | 제6장 근무평정   | 제39조(평정원칙), 제40조(평정시기 및 대상), 제41조(평정요소), 제42조(평정방법), 제43조(평정자), 제44조(가감점 요소 배점기준), 제45조(결과보고), 제46조(평정결과의 활용), 제47조(취급 및 보관)  |
|                  |  | 제7장 포상     | 제48조(포상원칙), 제49조(포상의 종류와 표창장), 제50조(포상심사절차), 제51조(포상대상), 제52조(포상의 시기), 제53조(부상 등), 제54조(상장 등), 제55조(이중표창의 금지)   |
| 제8장 징계           | 제56조(징계원칙), 제57조(징계의 사유), 제58조(징계의 종류), 제59조(징계양정기준), 제60조(징계의 효력), 제61조(징계절차), 제62조(징계의결 요구), 제63조(위원회의 개최통지 등), 제64조(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제65조(진술권 보장), 제66조(심문 및 의견청취), 제67조(징계의결), 제68조(징계사유의 시효), 제69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70조(징계의 감경), 제71조(징계의 가중), 제72조(의결통보), 제73조(징계의 집행), 제74조(징계의 효력), 제75조(재심청구 및 재심의결), 제76조(손해배상) |            |   |

|                |                     |   |
|----------------|---------------------|---|
|                | <b>제9장 보칙</b>       | 제77조(인사기록)  |
|                | <b>부칙</b>           | 제1조(시행일), 제2조(법령 등의 우선)   |
|                | <b>별표</b>           | [별표 1] 포상내용, [별표 2] 징계양정기준, [별표 3]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4]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별표 5] 징계양정 감경기준   |
|                | <b>별지</b>           | [별지 제1호서식] 평가표, [별지 제2호서식] 자기평가서, [별지 제3호서식] 출석통지서와 진술권 포기서, [별지 제4호서식] 징계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 징계재심의결서, [별지 제6호서식] 징계처분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징계처분이유서, [별지 제8호서식] 징계재심청구서 |
| <b>3. 급여</b>   | <b>제1장 총칙</b>       |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급여체계), 제4조(지급일)   |
|                | <b>제2장 급여계산</b>     | 제5조(계산기간), 제6조(일할계산), 제7조(상병휴직자), 제8조(단수절사)   |
|                | <b>제3장 기본급 및 수당</b> | 제9조(범위), 제10조(구분), 제11조(최저임금보장), 제12조(임금의 지급방법), 제13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14조(지각·조퇴 공제), 제15조(무단결근)   |
| <b>4. 여비</b>   | <b>부칙</b>           | 제1조(시행일), 제2조(법령 등의 우선)   |
|                | <b>제1장 총칙</b>       | 제1조(목적), 제2조(여비의 구분), 제3조(여비계산), 제4조(여비의 지급), 제5조(여비지급의 제한), 제6조(직원 이외인의 여비), 제7조(소요경비의 지급)   |
|                | <b>제2장 국내여비</b>     | <b>제1절 출장여비</b><br>제8조(지급기준), 제9조(일비, 숙박비 및 식비계산), 제10조(당일출장여비 계산), 제11조(출장 중 사고 시 등의 여비)<br><b>제2절 시내교통비</b><br>제12조(지급기준)                                   |
|                | <b>제3장 국외여비</b>     | 제13조(국외여행자의 구분), 제14조(국외여비 지급기준), 제15조(수속잡비), 제16조(체재비), 제17조(장기체재자에 대한 체재비 지급)   |
|                | <b>제4장 보칙</b>       | 제18조(교육 연수 등에의 준용), 제19조(출장 중 사고)   |
|                | <b>부칙</b>           | 제1조(시행일), 제2조(법령 등의 우선)   |
| <b>5. 퇴직금</b>  | <b>제1장 총칙</b>       |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지급대상), 제4조(퇴직금의 지급), 제5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6조(교육), 제7조(퇴직금산정), 제8조(퇴직금의 수령권자), 제9조(퇴직금의 지급기한), 제10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제11조(근로기준법과의 관계)          |
|                | <b>부칙</b>           | 제1조(시행일), 제2조(법령 등의 우선)   |
| <b>6. 복무관리</b> | <b>제1장 총칙</b>       |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신분보장), 제5조(균등대우)   |

|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복무</b></p> | <p><b>제1절 통칙</b><br/>제6조(실무원칙), 제7조(성실의무), 제8조(친절의 의무), 제9조(청렴의 의무), 제10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2조(손해배상), 제13조(복종의 의무), 제14조(직장이탈 및 검직 금지), 제1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16조(파견근무)</p> <p><b>제2절 근무시간 등</b><br/>제17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제18조(시간외 근무의 구분), 제19조(시간외 근무 및 휴일 등 근무), 제20조(교대근무), 제21조(공민권 행사 및 공의 직무 수행), 제22조(간주근로시간제), 제23조(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의 적용제외)</p> <p><b>제3절 출근·퇴근·결근</b><br/>제24조(출근 및 결근), 제25조(지각 및 조퇴), 제26조(외출)</p> <p><b>제4절 출장</b><br/>제27조(출장명령), 제28조(출장 중의 사정변경), 제29조(출장보고), 제30조(출장여비)</p> <p><b>제5절 휴일 및 휴가</b><br/>제31조(휴일), 제32조(주휴일), 제33조(교대근무자의 휴일), 제34조(휴일근무), 제35조(휴가의 종류), 제36조(휴가의 종류), 제36조(연가일수), 제37조(연가), 제38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39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40조(임산부의 보호), 제41조(병가), 제42조(공가), 제43조(경조휴가), 제44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제45조(출산전후 휴가 등), 제46조(생리휴가), 제47조(휴가의 신청), 제48조(휴가변경), 제49조(휴가소멸), 제50조(휴가사용촉진), 제51조(휴가기간의 초과)</p> <p><b>제6절 휴직 및 복직</b><br/>제52조(휴직), 제53조(휴직기간), 제54조(휴직자의 대우), 제55조(휴직자의 복직)</p> <p><b>제7절 퇴직</b><br/>제56조(정년퇴직), 제57조(당연퇴직), 제58조(직권면직), 제59조(권고사직 등), 제60조(퇴직금 등 금품의 정산)</p> |
|  |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br/>평등·모성보호</b></p> |  | <p>제61조(성차별), 제6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제63조(직장 내 성희롱), 제64조(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의 의무), 제65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p>   |
|  |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복지후생</b></p>        |  | <p>제66조(능력향상을 위한 시책강구), 제67조(기타후생)</p>   |
|  |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p>              |  | <p>제1조(시행일), 제2조(법령 등의 우선)</p>   |
|  | <p style="text-align: center;"><b>별표</b></p>              |  | <p>[별표 1]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p>  |
|  | <p style="text-align: center;"><b>별지</b></p>              |  | <p>[별지 제1호서식]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 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p>  |

|         |                 |   |
|---------|-----------------|---|
|         |                 | <p>휴직원, [별지 제4호서식] 복직원, [별지 제5호서식] 사직서</p> <p>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문서의 성립), 제5조(문서처리의 원칙), 제6조(문서화의 원칙), 제7조(문서 송달의 원칙), 제8조(주관부서의 업무), 제9조(문서 취급자), 제10조(문서의 종류), 제11조(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 제12조(문서의 작성), 제13조(정보공개구분),</p> <p>제14조(결재의 효과), 제15조(요지표시), 제16조(협조), 제17조(전결), 제18조(대결), 제19조(결재문서의 간인)</p> <p>제20조(문서의 접수), 제21조(문서수발부), 제22조(소관부서 문서의 처리), 제23조(선람결재), 제24조(문서의 등록)</p> <p>제25조(관인 날인), 제26조(관인 날인의 생략), 제27조(관인 인영의 인쇄사용), 제28조(문서의발송)</p> <p>제29조(용어의 정리), 제30조(문서관리 단위), 제31조(문서의 편철), 제32조(기록물의 작성 및 등록), 제33조(기록물의 이관), 제34조(보존문서 관리), 제35조(보존기간), 제36조(보존기간의 산정), 제37조(폐기)</p> <p>제1조(시행일), 제2(법령 등의 우선)</p> <p>[별표 1] 기안문 서식 예시, [별표 2] 시행문 서식 예시</p> |
| 7. 문서관리 | 제1장 총칙          |   |
|         | 제2장 결재          |   |
|         | 제3장 문서의 접수 및 등록 |   |
|         | 제4장 문서의 시행      |   |
|         | 제5장 기록물 관리      |   |
|         | 부칙              |   |
|         | 별표              |   |
| 8. 재무회계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관련법령의 준용), 제3조(기본원칙)   |
|         | 제2장 예산결산        | 제4조(예산편성지침),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세출예산의 이월), 제7조(재원의 적립), 제8조(결산서의 작성)   |
|         | 제3장 회계          | 제9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제10조(수입금의 수납), 제11조(여입 및 반환), 제12조(지출의 원칙), 제13조(지출의 특례), 제14조(예수금의 관리), 제15조(감사), 제16조(세무)   |
|         | 제4장 계약          | 제17조(계약), 제18조(준용)  |
|         | 제5장 물품          | 제19조(물품관리의 목적), 제20조(적용범위), 제21조(용어의 정리), 제22조(물품의 관리원), 제23조(사용관리), 제24조(물품가액), 제25조(물품정비 의무), 제26조(비품등기 및 등기번호), 제27조(내용연수), 제28조(재물조사), 제29조(비품의 분실 등), 제30조(비품의 관리전환), 제31조(비품의 수리, 폐기), 제32조(비품의 불용 결정 기준), 제33조(불용품처분의 절차), 제34조(불용품의 매각)   |
|         | 제6장 후원금 관리      | 제35조(후원금의 범위 등), 제36조(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제37조(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제38조(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제39조(후원금의 용도와 사용금지), 제40조(후원금의 사용)  |
|         | 부칙              | 제1조(시행일), 제2조(법령 등의 우선)   |
| 9. 시설관리 | 제1장 시설물 관리      |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주관부서 및 관리담당), 제4조(시설관리), 제5조(시설유지관리 세부내용)   |
|         | 제2장             | 제6조(목적), 제7조(기본방향), 제8조(안전사고의 유형), 제9조(주  |

|             |  |  |
|-------------|--|--|
| 10. 인권보장    | 시설안전관리   | 요사고 예방추진), 제10조(주요시설 안전예방 추진), 제11조(세부 추진사항), 제12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             | 부칙   | 제1조(시행일), 제2(법령 등의 우선)   |
|             | 별표   | [별표 1] 시설안전관리요약  |
|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
|             | 제2장 이용자의 인권  | 제3조(인권의 정의), 제4조(인권을 존중받을 권리), 제5조(인권교육), 제6조(차별금지), 제7조(이용자 권익보호), 제8조(이용자와의 약속이행), 제9조(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 제10조(비밀보장 제한), 제11조(고지된 동의)   |
|             | 제3장 인권 침해의 예방 및 촉구   | 제12조(인권 침해의 정의), 제13조(인권 침해의 범위), 제14조(인권 침해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관의 조치사항), 제15조(인권 침해-학대방지를 위한 직원의 조치사항), 제16조(인권 침해 관련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제17조(인권 침해 정보수집, 조사 및 처리방법), 제18조(학대사례 판정과정), 제19조(후속 보호조치-인권 침해 결과에 의한 가해자 처리규정 포함), 제20조(이용자에게 인권 침해 및 학대를 한 직원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와 징계), 제21조(동료 이용자 간, 직원에게 인권 침해 및 학대를 한 이용자의 제재와 절차), 제22조(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직원의 개입) |
|             | 제4장 이용자 참여   | 제23조(참여안내), 제24조(사업계획), 제25조(사업평가), 제26조(이용자 자조 모임 지원), 제27조(이용자의 사회참여 지원)   |
|             | 제5장 이용자 권리   | 제28조(전문서비스 요구권리), 제29조(이용자의 안전편의 권리), 제30조(이용자의 알 권리), 제31조(정보제공 및 자기 결정권)   |
|             | 제6장 이용자 고충처리   | 제32조(목적), 제33조(신청), 제34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35조(고충사항의 접수), 제36조(고충 사항의 처리 기간), 제37조(고충 사항의 처리), 제38조(반복 및 중복 고충의 처리), 제39조(접수거부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제4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제41조(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             | 제7장 이용자 만족   | 제42조(만족도 또는 욕구조사), 제43조(만족도조사 및 욕구조사 결과보고), 제44조(처리절차 및 결과 등 제반사항)   |
| 제8장 직원 인권보호 | 제45조(목적), 제46조(정의), 제47조(인권보장의 원칙), 제48조(책무), 제49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0조(폭언-폭력, 따돌림, 부당업무 강요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51조(학습활동의 자유), 제52조(휴식을 취할 권리), 제53조(복지에 관한 권리), 제54조(근무환경에 대한 권리), 제55조(문화-체육활동을 누릴 권리), 제56조(인권교육-연수), 제57조(인권 옹호를 위한 윤리위원회), 제58조(인권 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제59조(조사), 제60조(인권침해자에 대한 조치) |  |
| 부칙          | 제1조(시행일), 제2조(법령 등의 우선)  |  |
| 별표          | [별표 1] 이용자의 권리와 참여 안내문, [별표 2] 이용자에 대한 학대 금지 서약서, [별표 3] 기밀유지 서약서, [별표 4] 이용자 고  |  |

|  |                    |   |
|--|--------------------|---|
|  |                    | <p>총 처리 신청서, [별표 5] 고충 처리 결과 안내서, [별표 6] 이용자 참여를 위한 모니터링단 위원 회의록, [별표 7] 인권 침해 사건 보고서</p>   |
|  |                    | <p><b>제1장 총칙</b><br/>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리),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p>  |
|  | <p>11. 개인정보 보호</p> | <p><b>제2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b></p> <p><b>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b><br/>제4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5조(개인정보의 제공), 제6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7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제9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제10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1조(법정대리인의 동의), 제12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13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p> <p><b>제2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b><br/>제14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15조(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p> <p><b>제3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b><br/>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제1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p> <p><b>제4절 개인정보보호책임자</b><br/>제2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제2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교육), 제22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p> <p><b>제5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등</b><br/>제23조(개인정보의 유출), 제24조(유출 통지시기 및 항목), 제25조(유출 통지방법), 제26조(개인정보 유출신고 등), 제27조(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 등)</p> <p><b>제6절 정보주체의 권리보장</b><br/>제28조(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 제29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0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p> |
|  |                    | <p><b>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b></p> <p><b>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b><br/>제32조(적용범위), 제3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제34조(관리책임자 지정), 제35조(사전의견 수렴), 제36조(안내판의 설치)</p> <p><b>제2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b><br/>제37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제38조(보관 및 파기), 제39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제4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p> <p><b>제3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b><br/>제41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제42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상), 제43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정보 보호)</p>   |

|  |           |  |
|--|-----------|--|
|  |           | <b>제4절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b><br>제44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제45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
|  | <b>부칙</b> | 제1조(시행일), 제2조(경과규정), 제3조(법령 등의 우선)   |
|  | <b>별지</b> |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제공 대장 |

[제3호 의안인 법인 운영규정 개정(안)에 관하여 임원들이 심의하다.]

< 임원 제안내용 >

| 규정     | 조항  | 질의 /의견  | 제안자    | 동의 여부 |
|--------|---|---|--------|-------|
| 산하시설관리 | 제5조(운영의 기본원칙) 산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br>(중략)<br>6. <b>복지 대상자</b> 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본 시설과 공간을 확보·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략)  | 수정: 6호. '복지 대상자' → '이용자' 로 변경<br>근거: 법인 산하 시설의 유형 고려, 타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통일 필요<br><br>최종결정사항: '6. 서비스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 노력해야 한다.' 로 수정 | 현안나 이사 | 전원 동의 |
| 인사관리   | 제31조(직위해제) ① "법인 및 산하시설"의 대표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br>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br>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자<br>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 <b>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b> )<br>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시설의 이 | 수정: 제1항 3호.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삭제 요망<br>근거: 경우에 따라서 악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삭제하였으면 함   | 장수복 이사 | 전원 동의 |
|        |   | 수정: 제1항 5호. 삭제 요망<br>근거: 5호는 1호에서 명시한 직위해제 사유('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와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됨   | 현안나 이사 | 전원 동의 |

| 규정   | 조항   | 질의 /의견   | 제안자    | 동의 여부 |
|------|--|--|--------|-------|
|      | 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자<br><b>5.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극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b>   |  |        |       |
| 복무관리 | <b>제13조(복종의 의무)</b> 모든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b>수정:</b> '모든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b>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b> ' [문장 추가]<br>참고: 『지방공무원법』 제 48조 (복종의 의무)                                 | 현안나 이사 | 전원 동의 |
| 인권보장 | <b>제3장 인권침해의 예방 및 복구</b><br>제16조(인권침해 관련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br>제17조(인권침해 정보수집, 조사 및 처리방법)<br>제18조(학대사례 판정과정)<br>제19조(후속 보호조치-인권 침해 결과에 의한 가해자 처리규정 포함)<br>제20조(이용자에게 인권 침해 및 학대를 한 직원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와 징계)<br>제21조(동료 이용자 간, 직원에게 인권 침해 및 학대를 한 이용자의 제재와 절차)<br>제22조(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직원의 책임) | <b>수정:</b> 제16조~제22조는 인권침해 발생에 따른 사후조치와 피해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b>3장 제목의 '복구'를 '대응' 또는 '회복'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함</b><br><br><b>최종결정사항: 수정 없이 기존 유지</b>                | 현안나 이사 | 전원 동의 |
|      | <b>제5조(인권교육)</b> "법인 및 산하시설"은 이용자와 <b>종사자</b> 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br><br><b>제56조(인권교육·연수)</b> ① "법인 및 산하시설"의 대표는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br>② "법인 및 산하시설"의 대표는 직원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b>수정:</b> 두 개의 조항 모두에서 '종사자 인권교육'을 언급함. 즉 제 56조에서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b>제5조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인권교육만 규정하였으면 함(교육대상에서 종사자 삭제)</b><br><br><b>최종결정사항: 수정 없이 기존 유지</b> | 현안나 이사 | 전원 동의 |

○ 이오복 이사는 복무관리규정 제67조(기타후생) 2호 직원들의 근무복 제공이 가능한지 묻는다.

○ 복지지원팀장은 시설에서 시설직원의 건강진단비, 기타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타

후생경비 계정과목으로 지출하기도 하며, 직원 근무를 위한 단체복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변하다.

- 이오복 이사는 법인사무국규정 제10조(근무)에서 법인사무국 종사자의 근무시간이 7시간 30분이면, 주 40시간 미만 근무(복무관리규정 제23조)를 하는 것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묻는다.
- 복지지원팀장은 법인의 경우 시설과 다른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있고, 순번제 토요일 당직 근무를 하고 있어 주40시간 미만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다. 주40시간의 미만은 문제가 되지 않고, 초과될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의 성격으로 보고 급여 등의 고려할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하다.
- 의장은 그 외 질의사항이 없는지 묻고, 그 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수정(안)을 포함하여 승인하여 주기를 요청하다.
- 이에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3호 의안인 법인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에 대하여 원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가결되었음을 의장이 선언하다.



◇ 제4호 의안 : 산하시설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의장은 상임이사에게 해당 의안에 관해 설명을 요청하다.
- 상임이사는 서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산서구지역자활센터,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상정하였다고 설명하다.

가. 서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 구분        |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          |
|-----------|---|--|---------------|
| 제2장 운영 개요 | <b>제 3조 (직원구성)</b><br>센터의 기본운영요원은 <u>사회복지사 또는 계약직 등 2명</u> 을 두며 예산의 허용한도 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b>제 3조 (직원구성)</b><br>센터의 기본운영요원은 <u>센터장, 사회복지사 3명</u> 을 두며, 예산의 허용한도 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 추가인력지원      |
|           | <b>제 13조 (이용료)</b><br>1. 이용료는 월 <u>일십삼만 원</u> 을 기본으로 하며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되 물가 변동에 의해 이용료는 조정될 수 있다.      | <b>제 13조 (이용료)</b><br>1. 이용료는 월 <u>일십육만 원</u> 을 기본으로 하며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되 물가 변동에 의해 이용료는 조정될 수 있다.   | -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 |

나. 부산서구지역자활센터

| 구분                     |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장 장기요양 급여 비용 및 급여 기준 | <b>제9조 (방문요양 급여비용)</b><br>□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금액(원)</th> <th>구분</th> <th>금액(원)</th> </tr> </thead> <tbody> <tr> <td>30분 이상</td> <td>14,750</td> <td>150분 이상</td> <td>43,570</td> </tr> <tr> <td>60분 이상</td> <td>22,640</td> <td>180분 이상</td> <td>48,170</td> </tr> <tr> <td>90분 이상</td> <td>30,370</td> <td>210분 이상</td> <td>52,400</td> </tr> <tr> <td>120분 이상</td> <td>38,340</td> <td>240분 이상</td> <td>56,320</td> </tr> </tbody> </table> | 구분               | 금액(원)  | 구분    | 금액(원) | 30분 이상 | 14,750 | 150분 이상 | 43,570 | 60분 이상 | 22,640 | 180분 이상 | 48,170 | 90분 이상 | 30,370 | 210분 이상 | 52,400 | 120분 이상 | 38,340 | 240분 이상 | 56,320 | <b>제9조 (방문요양 급여비용)</b><br>□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금액(원)</th> <th>구분</th> <th>금액(원)</th> </tr> </thead> <tbody> <tr> <td>30분 이상</td> <td>15,430</td> <td>150분 이상</td> <td>44,770</td> </tr> <tr> <td>60분 이상</td> <td>22,380</td> <td>180분 이상</td> <td>50,400</td> </tr> <tr> <td>90분 이상</td> <td>30,170</td> <td>210분 이상</td> <td>56,170</td> </tr> <tr> <td>120분 이상</td> <td>38,390</td> <td>240분 이상</td> <td>61,950</td> </tr> </tbody> </table> | 구분 | 금액(원) | 구분 | 금액(원) | 30분 이상 | 15,430 | 150분 이상 | 44,770 | 60분 이상 | 22,380 | 180분 이상 | 50,400 | 90분 이상 | 30,170 | 210분 이상 | 56,170 | 120분 이상 | 38,390 | 240분 이상 | 61,950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21-324호 (2021.12.27.)」<br><br>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근거 |
|                        | 구분   | 금액(원)            | 구분     | 금액(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분 이상                 | 14,750   | 150분 이상          | 43,5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분 이상                 | 22,640   | 180분 이상          | 48,1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분 이상                 | 30,370   | 210분 이상          | 52,4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분 이상                | 38,340   | 240분 이상          | 56,3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금액(원)  | 구분               | 금액(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분 이상                 | 15,430   | 150분 이상          | 44,7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분 이상                 | 22,380   | 180분 이상          | 50,4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분 이상                 | 30,170   | 210분 이상          | 56,1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분 이상                | 38,390   | 240분 이상          | 61,9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원)   |               |               |               |               | 단위(원)   |               |               |               |               |                            |
|--|---|---------------|---------------|---------------|---------------|---|---------------|---------------|---------------|---------------|----------------------------|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 1,520,<br>700   | 1,351,<br>700 | 1,295,<br>400 | 1,189,<br>800 | 1,021,<br>300 | 1,672,<br>700   | 1,486,<br>800 | 1,350,<br>800 | 1,244,<br>900 | 1,068,<br>500 |                            |
| <b>제3장<br/>장기<br/>요양<br/>급여<br/>비용<br/>및<br/>급여<br/>기준</b> | <p>1.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p> <p>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p> <p>3.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대상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서비스 시간의 수가에 100%를 가산함. (단 120분 미만에 한함)</p>  |               |               |               |               | <p>1.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p> <p>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p> <p>3.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대상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50분 이상 급여비용 산정함.</p>   |               |               |               |               |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근거 |
| <b>제11장<br/>근로<br/>조건</b>                                  | <p><b>제65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b></p> <p>1.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u>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u></p> <p>2. 20분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및 야간, 휴일근로에 근로시키는 경우에는 시간급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3. 기관은 근로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p> |               |               |               |               | <p><b>제65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b></p> <p>1.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u>연장·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u></p> <p>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p> <p>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p> <p>나.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p> <p>3.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4.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p> |               |               |               |               | - 「근로기준법」 제56조 근거          |

|  |                                       |   |  |
|--|---------------------------------------|---|--|
|  | <p>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p> | <p>킬 수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를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및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시간급 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5. 기관은 근로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p> |  |
|--|---------------------------------------|---|--|

**다.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 구분  |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                             |
|---|---|---|----------------------------------|
| <p>기본편<br/>운영<br/>규정</p>                        | <p><b>제6조 (미션)</b><br/>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우리는 장애인과 지역사회의 연결고리가 되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간다.</p>   | <p><b>제6조 (미션)</b><br/>고유한 삶이 빛나도록 사랑으로 연결하다.<br/>조작적 정의: 모든 사람이 고유한 삶이 존중받도록 이웃 사랑 실천으로 장애인과 지역사회를 이어갑니다.</p>  | <p>- 미션 비전 선포에 따른 내용 개정사항 반영</p> |
| <p>제2장<br/>경영<br/>이념</p>                        | <p><b>제8조 (비전)</b><br/>본 복지관의 비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사람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복지관, 장애인복지의 거점기관으로 신뢰받는 복지관, 성장과 변화에 능동적인 복지관</p>   | <p><b>제8조 (비전)</b><br/>당사자의 주체성 확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2026.</p>   | <p>- 미션 비전 선포에 따른 내용 개정사항 반영</p> |
| <p>기본편<br/>운영<br/>규정<br/>제4장<br/>운영<br/>위원회</p> | <p><b>제21조 (위원회의 구성)</b><br/>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관장(이하 '관장'이라 칭한다)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br/>②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장이 추천하고 울산광역시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관계공무원은 관장이 추천하지 아니한다.<br/>- 관장<br/>- 이용자 대표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p> | <p><b>제21조 (위원회의 구성)</b><br/>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관장(이하 '관장'이라 칭한다)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br/>②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장이 추천하고 울산광역시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관계공무원은 관장이 추천하지 아니한다.<br/>- 관장<br/>- 이용자 대표</p> | <p>-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지침에 따라 내용 수정</p> |

| 구분   |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  |
|--|---|---|---|
|  | <p><u>대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관 종사자 대표</li> <li>-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li> <li>-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밖에 복지관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ul> <p>③ 이용자 대표는 공개모집을 통해 민주적으로 선정한다.</p> <p>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이용자의 보호자대표</u></li> <li>- 복지관 종사자 대표</li> <li>-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li> <li>-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li> <li>-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밖에 복지관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ul> <p>③ 이용자 대표는 공개모집을 통해 민주적으로 선정한다.</p> <p>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   |
| <p><b>기본편</b></p> <p><b>윤리경영 규정</b></p> <p><b>보칙</b></p> | <p><b>제6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b></p> <p>① 관장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7명의 위원(간사 1명 포함)을 임명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p> <p>② 윤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윤리강령, 실천지침의 제정과 개정</li> <li>2. 윤리경영이념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li> <li>3. 윤리경영이념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li> <li>4. 윤리경영 이념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li> <li>5. 기타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습득한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 <p><b>제6조(윤리위원회 및 윤리실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b></p> <p>① 관장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을 임명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p> <p>② 윤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윤리강령, 실천지침의 제정과 개정</li> <li>2. 윤리경영이념의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li> <li>3. 윤리경영 이념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윤리실천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의 논의 및 처리</li> <li>4. 기타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③ 관장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을 임명하여 윤리실천위원회를 구성한다.</p> <p>④ 윤리실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리경영 체계화에 따른 윤리위원회 및 윤리실천위원회 내용보완</li> </ul> |

| 구분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   | <p>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윤리경영이념의 교육에 관한 사항</li> <li>2. 윤리경영 이념의 위반행위 안건 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li> </ol> <p>⑤ 윤리위원회 및 윤리실천위원회는 제②항과 제④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습득한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윤리위원회 외부위원과 관련하여 시설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                                   |
| <p>인사<br/>관리편</p> <p>인사<br/>관리<br/>규정</p> <p>제2장<br/>인사<br/>위원회</p>                | <p><b>제5조(구성)</b><br/>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의하여 5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위 원 장 : 관장</li> <li>② 부위원장 : 사무국장</li> <li>③ 위원 : 기획홍보팀장, <u>2급 이상의 직원</u>, 복지관 운영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및 법인위촉위원</li> <li>④ 간사 : 기획홍보 팀장</li> <li>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li> </ol> | <p><b>제5조(구성)</b><br/>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의하여 5인 이상 <u>7인 이하</u>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위 원 장 : 관장</li> <li>② 부위원장 : 사무국장</li> <li>③ 위원 : 기획홍보팀장, <u>3급 이상의 팀장</u>, 복지관 운영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및 법인위촉위원</li> <li>④ 간사 : 기획홍보 팀장</li> <li>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li> </ol> | <p>-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에 의거하여 수정</p> |
| <p>인사<br/>관리편</p> <p>보수<br/>및<br/>퇴직금<br/>규정</p> <p>제3장<br/>호봉회<br/>정 및<br/>승급</p> | <p><b>제6조(인정경력)</b><br/>대상경력(복지관 근무경력, 군복무 근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공무원경력 및 타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인정한다.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중 유형별 복지관 개별 지침을 참조하여 준용한다.</p>  | <p><b>제6조(인정경력)</b><br/>대상경력(복지관 근무경력, 군복무 근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공무원경력 및 타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인정한다.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및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참조하여 준용한다. 단,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및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제시되지 않은 운전기사, 시설관리사 등의 관리직의 경우 지자체 보고를 통해 근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p>  | <p>- 경력인정 참조 사항 내용보완</p>          |

| 구분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조직 관리편<br>조직 및 업무 분장 규정<br>제2장 직제 및 기능 | <p>             &lt;별표 2-1&gt; 기구표<br/>             기구표 &lt;개정 2017. 11. 29&gt; &lt;개정 2020. 3. 4&gt;<br/>             0 1국 8팀           </p> | <p>             &lt;별표 2-1&gt; 기구표<br/>             기구표<br/>             0 1국 9팀           </p> <p>             &lt;개정 2007. 12. 25&gt;<br/>             &lt;개정 2009. 10. 1&gt;<br/>             &lt;개정 2023. 1. 1&gt;           </p> | <p>             - 조직 개편으로 인한 신설팀 (긍정행동지원팀) 추가           </p> |

현행

개정사유

<서식2-1> 팀별 주요 업무분장

<서식2-1> 팀별 주요 업무분장

| 팀명         | 분류          | 주요 사업  |
|------------|-------------|--|
| 6. 직원지원팀   | 직원지원 및 평가   | - 스포츠 프로그램<br>- 문화여가 프로그램<br>- 문화예술인 및 스포츠선수 육성<br>- 평생교육<br>- 취미활동 지원<br>- 기타     |
|            | 직원처용 및 역량개발 | - 최종중성인발달장애인 닛플동지원 및 도전적 행동 총재<br>- 직원처용훈련<br>- 직원훈련                               |
|            | 사업체 개발 및 관리 | - 사업체 개발<br>- 사업체 관리<br>- 기타   |
|            | 기타          | - 운동발달<br>- 작업활동<br>- 다감각촉진활동<br>- 심리안정치료, 심리이완치료, 심리안정만용<br>- 인지치료 등)<br>- 감각통합활동 |
| 7. 기능향상지원팀 | 운동·지각 향상    | - 운동발달<br>- 작업활동<br>- 다감각촉진활동<br>- 심리안정치료, 심리이완치료, 심리안정만용<br>- 인지치료 등)<br>- 감각통합활동 |
|            | 의사 소통향상     | - 언어활동   |
|            | 기타          | - 기타(에팔보조기구대여 및 관리 등)  |
|            | 회계          | - 회계 및 문서관리  |
| 8. 운영지원팀   | 시설 운영       | - 시설 및 차량관리(이동지원)<br>- 식당운영  |
|            | 내관 및 내어     | - 보장구 관리, 수리, 임대   |
|            | 시설 운영       | - 시설 및 차량관리(이동지원)<br>- 식당운영  |

| 팀명           | 분류             | 주요 사업  |
|--------------|----------------|--|
| 5. 가족·문화 지원팀 | 문화 및 스포츠지원     | - 스포츠 프로그램<br>- 문화여가 프로그램<br>- 문화예술인 및 스포츠선수 육성<br>- 평생교육<br>- 취미활동 지원<br>- 기타     |
|              | 평생교육           | - 최종중성인발달장애인 닛플동지원 및 도전적 행동 총재<br>- 직원처용훈련<br>- 직원훈련                               |
|              | 기타             | - 사업체 개발<br>- 사업체 관리<br>- 기타   |
|              | 가족기능 강화        | - 운동발달<br>- 작업활동<br>- 다감각촉진활동<br>- 심리안정치료, 심리이완치료, 심리안정만용<br>- 인지치료 등)<br>- 감각통합활동 |
| 6. 경쟁행동지원팀   | 직업취득 및 역량개발 훈련 | - 직업취득훈련<br>- 직업훈련   |
|              | 기타             | - 직업취득훈련<br>- 직업훈련   |
|              | 직업상담 및 평가      | - 직업상담<br>- 직업평가<br>- 구인 및 구직상담  |
|              | 직업처용 및 역량개발훈련  | - 직업취득훈련<br>- 직업훈련<br>- 취업알선(직원고용 등)<br>- 현장훈련<br>- 취업 후 지도                        |
| 7. 직업지원팀     | 사업체 개발 및 관리    | - 사업체 개발<br>- 사업체 관리<br>- 기타   |
|              | 기타             | - 운동발달<br>- 작업활동<br>- 다감각촉진활동<br>- 심리안정치료, 심리이완치료, 심리안정만용<br>- 인지치료 등)<br>- 감각통합활동 |
|              | 운동·지각 향상       | - 운동발달<br>- 작업활동<br>- 다감각촉진활동<br>- 심리안정치료, 심리이완치료, 심리안정만용<br>- 인지치료 등)<br>- 감각통합활동 |
|              | 의사 소통향상        | - 언어활동   |
| 8. 기능향상지원팀   | 기타             | - 기타(에팔보조기구대여 및 관리 등)  |
|              | 회계             | - 회계 및 문서관리  |
|              | 시설 운영          | - 시설 및 차량관리(이동지원)<br>- 식당운영  |
|              | 내관 및 내어        | - 보장구 관리, 수리, 임대   |

구분

조직 관리편

조직 및 업무 분장 규정

제3장 업무 분장

| 구분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인사<br/>관리편</p> <p>제3장<br/>휴가</p> <p>제24조<br/>(특별<br/>휴가)</p> | <p>&lt;별표 3-3&gt; 특별휴가 일수표<br/>(개정 2017. 12. 29) &lt;개정 2020. 3. 1&gt;</p> <p><b>특별휴가 일수표</b></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대상</th> <th>일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결혼</td> <td>본인</td> <td>5</td> </tr> <tr> <td>자녀</td> <td>1</td> </tr> <tr> <td rowspan="2">출산</td> <td>형제자매</td> <td>1</td> </tr> <tr> <td>배우자</td> <td>10일</td> </tr> <tr> <td rowspan="2">입양</td> <td>본인</td> <td>20</td> </tr> <tr> <td>본인</td> <td>-</td> </tr> <tr> <td rowspan="10">사망</td> <td>배우자</td> <td>5</td> </tr> <tr> <td>본인 부모</td> <td>5</td> </tr> <tr> <td>배우자의 부모</td> <td>5</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td> <td>3</td> </tr> <tr> <td>자녀</td> <td>5</td> </tr> <tr> <td>자녀의 배우자</td> <td>3</td> </tr> <tr> <td>본인 형제자매</td> <td>3</td> </tr> <tr> <td>배우자의 형제자매</td> <td>3</td> </tr> </tbody> </table> |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출산 | 형제자매 | 1 | 배우자 | 10일 | 입양 | 본인 | 20 | 본인 | - | 사망 | 배우자 | 5 | 본인 부모 | 5 |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 | 자녀 | 5 | 자녀의 배우자 | 3 | 본인 형제자매 | 3 |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 <p>&lt;별표 3-3&gt; 특별휴가 일수표<br/>(개정 2017. 12. 29)</p> <p><b>특별휴가 일수표</b></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대상</th> <th>일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결혼</td> <td>본인</td> <td>5</td> </tr> <tr> <td>자녀</td> <td>1</td> </tr> <tr> <td rowspan="2">출산</td> <td>배우자</td> <td>10</td> </tr> <tr> <td>본인</td> <td>20</td> </tr> <tr> <td rowspan="2">입양</td> <td>본인</td> <td>20</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td> <td>5</td> </tr> <tr> <td rowspan="2">사망</td> <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td> <td>3</td> </tr> <tr> <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 <td>3</td> </tr> <tr> <td rowspan="2">사망</td> <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 <td>1</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 <td>1</td> </tr> </tbody> </table> |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출산 | 배우자 | 10 | 본인 | 20 | 입양 | 본인 | 20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 5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p>- 법인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내용 변경</p> |
| 구분  | 대상   | 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혼  | 본인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녀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산  | 형제자매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우자  | 1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양  | 본인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망  | 배우자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 부모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우자의 부모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녀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녀의 배우자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 형제자매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대상    | 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혼   | 본인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녀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산  | 배우자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양  | 본인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안나 이사가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제6조(미션)의 '조작적 정의'는 삭제하는 것은 어떠한지 묻다.
- 복지지원팀장이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내부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추후에 확인하겠다고 대답하다.
- 강정웅 상임이사가 제6조(미션)의 '모든 사람이 고유한 삶'이 아닌 '모든 사람의 고유한 삶'이 아닌지 묻다.
- 복지지원팀장이 추후에 오타인지 확인하겠다고 대답하다.
- 이오복 이사가 기관에서 한번 더 점검하기를 요청하다.
- 복지지원팀장이 기관에 점검을 요청하겠다고 대답하다.

[제4호 의안인 산하시설 운영규정 개정(안)에 관하여 임원들이 심의하다.]

- 의장은 질의사항이 없는지 묻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기를 요청하다.
- 이에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4호 의안인 산하시설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을 수정사항 반영하여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5호 의안 : 서로사랑공동생활가정 폐업 승인의 건

- 의장은 상임이사에게 해당 의안에 관해 설명을 요청하다.
- 상임이사는 울산지역에 소재한 서로사랑공동생활가정을 아래와 같이 폐업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1. 시설현황

| 명 칭     | 서로사랑공동생활가정                           | 시 설 종 류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
|---------|--------------------------------------|---------|-----------|----|----|
| 소 재 지   | 울산 중구 구루미 6길 35 301호 (전화 : 277-7942) |         |           |    |    |
| 시설장의 성명 | 서 종 근                                |         |           |    |    |
| 설치연월일   | 2012. 3. 9                           | 입소정원    | 4명        | 현원 | 4명 |

2. 폐업사유

- 담당직원의 소진  
: 사회복지사 1명이 거주인의 자립지원 외의 행정업무, 시설관리 등의 과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진이 극심한 상황임.
- 인력부족  
: 공동생활가정 담당인력 증원을 위한 관련 법규의 부재, 예산부족 및 과도한 업무로 인한 지원 기피로 공동생활가정 담당직원의 신규채용이 어려움.
-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보호자들의 요청  
: 장애인의 자립지원보다는 원가정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서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공동생활가정 운영 목적에 맞지 않음.

※ 관할 구청(중구)과 시설폐업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시설폐업에 관하여 보호자 및 거주인들 모두 동의함.

※ 울산광역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현황 (총 11개 시설)

3. 폐업예정일 : 2022년 6월 30일

4. 폐업 준비

| 월  | 준 비 내 용      | 세 부 사 항   |
|----|--------------|---|
| 3월 | 폐업신고서 제출     | 법인이사회 폐업 승인 후 폐업신고  |
| 5월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 | 거주인(4명) 원가정으로 귀가 후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원 조치 |

|                     |   |   |
|---------------------|---|---|
|                     | 이용료 반환  | 이용 종료일에 따라 사전에 차감하여 납부                                      |
| 6월                  | 시설 재산 처분                                      | * 비품처분<br>- 사무 및 생활용품 56종 유관기관 배분 후 폐기                      |
|                     |   | * 차량처분<br>- 마티즈(23수1194) 폐차처리<br>- 폐차 비용 및 수입 발생 시 시설자부담 처리 |
|                     |   | * 운영 관련 보험 및 계약해지<br>- 차량 보험, 전기, 도시가스, 인터넷 등               |
|                     |   | * 주택임대계약 해지<br>- 임대보증금(11,437,000원) 법인 자산 처리                |
|                     |   | * 시설수입 정리<br>- 자부담 및 후원금 사업비 전액 집행                          |
| 보조금, 후원금<br>사용 결과보고 | - 결과보고 및 잔액반납<br>- 보험 및 계약해지와 관련된 반환금(보조금) 반납 |   |

[제5호 의안인 서로사랑공동생활가정 폐업에 관하여 임원들이 심의하다.]


- 의장은 질의사항이 없는지 묻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기를 요청하다.
- 이에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5호 의안인 서로사랑공동생활가정 폐업 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의장이 선언하다.



◆ 폐회선언

의장은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마침기도로 이사회를 폐회하다.

2022. 3. 18.

|      |     |  |
|------|-----|--|
| 대표이사 | 김 명 |    |
| 상임이사 | 강 정 |    |
| 이 사  | 최 재 |    |
| 이 사  | 정   |   |
| 이 사  | 장 수 |  |
| 이 사  | 이 오 |  |
| 이 사  | 현 안 |  |
| 감 사  | 조 태 |  |
| 감 사  | 천 동 |  |

